이루리 실버 아카데미

업무 매뉴얼

최종 수정일(2026.07.27)

● 0. 총칙

0.1 이 매뉴얼은 이루리 실버 아카데미 강사의 업무 수행 및 계약 관계 전반에 적용된다.

0.2 강사는 회사와 **프리랜서(위촉) 계약을 맺은 사업소득자**이다. (급여의 세금·지급 방식은 1장에 따른다.)

0.3 이 매뉴얼은 최종 수정일부터 적용하며, 개정 시 강사에게 고지한다.

● 1. 임금 및 기타 비용

1.1 **기본 급여**

· 강사의 기본 수업료는 **회당 40,000원**으로 한다.

· 급여는 월별로 정산하며,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 지급액은 전체 수업료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1.2 강사의 수업료는 **입사 후 7개월째부터 회당 42,000원으로 인상**된다.

1.3 퇴사 후 월급도 정기 지급일(익월 10일)에 지급한다.

1.4 회사는 **회사가 사전 인정한 자격증**에 한하여, 3번째 월급에 **자격증 취득금액의 50%를 지급**한다.

1.5 강사의 **모의수업 진행 시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20,000원을 지급**한다.

1.6 센터·회사의 소통 오류나 실수로, 강사에게 사전 연락 없이 **취소된 수업 장소에 헛걸음할 경우, 회사가 수업료 20,000원을 지급**한다.

1.7 회사는 강사에게 **주차료 등 기타 부대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수업 수행과 무관한 개인 사건·사고 비용(주차장 파손, 식사 중 차량 긁힘 등)은 제외한다.)

1.8 회사는 강사에게 **장비(스피커)를 1회 제공**한다. (퇴사 시 반납 기준은 3.4에 따른다.)
(단, 고장 시 반납 가능하며 신규 구매 · 수리 기간 중 대여를 제공하되, 수리비는 강사가 부담한다.)

● 2. 근로 시 당부 사항

2.1 다른 강사의 보충수업을 할 때, 본 수업의 강사가 그 센터의 수업 일지를 작성한다.

2.2 한 달에 5주의 수업이 있을 시엔 4주만 수업할 수 있지만, 센터와의 협의가 우선이며 강사 본인 일정상의 휴강으로 인한 보충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5주 모두 수업을 할 수 있다.

2.3 법정 공휴일엔 휴강할 수 있지만, 센터에서 수업을 요청하거나 강사가 본인의 보강 수업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4 개인 일정이나 공휴일로 인하여 생기는 휴강은 일차적으로 강사 자신이 센터와 협의를 우선하며, 보충수업 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리자를 통하여 보강 일정을 논의한다.)

2.5 질병 혹은 강사의 건강상의 문제로 휴강 시 회사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다.

2.6 강사는 모든 수업 도구의 사용법을 숙지할 때까지 선임자나 관리자를 만나 도구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2.7 강사는 수업 도구 분실 시 같은 물품으로 구매하여 보충해 놓는다. (볼풀공, 근력 밴드, 스펀지 공 같은 분실하기 쉬운 도구 제외)

2.8 강사는 수업 도구가 파손되었을 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2.9 강사는 동료 강사와 아무리 친분이 있더라도 반말을 하지 않고, 서로 존대하며 상호 존중한다.

2.10 업무 중 어르신 등으로부터 금전적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즉시 센터장 또는 직급이 있는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3. 기타 근로 조건

3.1 강사는 퇴사 시 최소 2달 전에 회사와 상의해야 한다.
(단, 후임 강사 채용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3.2 강사가 사전 통보(3.1) 없이 무단으로 계약을 중단하여 회사에 실제 손해(센터 계약 해지 등)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3 강사는 퇴사 시 후임자의 인수인계에 최대한 협조한다.

3.4 강사에게 **제공된 장비는 퇴사 시 "완전 반납"을 해야 한다.** 고의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현 시세 가격을 기준으로 회사는 퇴사한 강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개인이 구매한 장비는 반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3.5 강사의 개인적인 사유로 결강 시(보고 없는 휴강, 연락 두절 등) 결강된 센터에 한하여 강사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무단 혹은 명확한 이유 없이 연 2회 이상 결강 시 퇴사를 권고할 수 있다.